##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4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 박준태·고동진·구자근

박충권 · 서명옥 · 조지연

김희정 • 이헌승 • 박덕흠

주진우 · 강선영 · 송석준

장동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 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집행권력에 대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오·남용하는 탄핵소추 발의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이 오히려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또한 이와 같다.
- ⑤ 국회는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탄핵소추를 발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
	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
	시하여야 하고, 행정권 및 사법
	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무총
	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또한 이와 같다.
<u>&lt;신 설&gt;</u>	⑤ 국회는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내에, 그 사실이 있은 날로
	부터 3년 내에 탄핵소추를 발
	의하여야 한다.